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 및 공무원근로자에 대한 노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입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5급 또는 연구관 2명, 6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을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에 국가하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에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에 설치한 기후변화 국제협력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4월 30일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환경부의 정원 17명(5급 9명, 6급 3명, 7급 5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의 정원 11명(5급 1명, 6급 4명, 7급 6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의 정원 14명(6급 4명, 7급 10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수도권대기환경청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4월 30일에서 각각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

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7.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4에 제2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야생동물검역센터) ①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공업연구원·농업연구원·보건연구원·환경연구원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역 계획의 수립
2.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검사·판정 및 수입검역증명서 발급
3. 야생동물검역관 및 야생동물검역사에 대한 교육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운영·관리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감독

제4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별표 8 중 총계 “396”을 “399”로 하고, 일반직 계 “396”을 “399”로 하며, 통계주사·사서주사 또는 전산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보 1”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화학물질 등록평가 담당) 9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살생물물질·제품 승인 담당) 2”를 신설한다.

별표 10의4 중 총계 “33”을 “4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3”을 “4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다음에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 2”를 신설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 다음에 “수의주사 3”을 신설하며,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 “3”을 “4”로 하고,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수의연구사 15 다음에 “수의연구사 4”를 신설한다.

별표 13 중 총계 “347”을 “349”로 하고, 일반직 계 “347”을 “349”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3”을 “54”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2”를 “13”으로 한다.

별표 14 중 총계 “349”를 “351”로 하고, 일반직 계 “349”를 “351”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9”를 “60”으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2”를 “13”으로 한다.

별표 16의2 중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환

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 다음에 “시설사무관·시설연구관 또는 기상연구관 7”을 신설하고, “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 7”을 삭제하며, 시설주사 7 다음에 “시설주사·시설연구사 또는 기상연구사 2”를 신설하고, “시설주사 또는 연구사 2”를 삭제한다.

별표 16의3 중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연구관 1 다음에 “시설사무관·시설연구관 또는 기상연구관 7”을 신설하고, “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 7”을 삭제하며, 시설주사 7 다음에 “시설주사·시설연구사 또는 기상연구사 2”를 신설하고, “시설주사 또는 연구사 2”를 삭제한다.

별표 21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3조제9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환경부령 제91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4년 4월 30일”을 “2026년 4월 30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제2항·제5항 및 제6항 중 “2024년 4월 30일”을 각각 “2026년 4월 30일”로, “2024년 5월 1일”을 각각 “2026년 5월 1일”로 한다.

환경부령 제105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2024년 4월 30일”을 각각 “2026년 4월 30일”로,

“2024년 5월 1일”을 각각 “2026년 5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3조의5(야생동물검역센터) ①</u> <u>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공업연</u> <u>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u> <u>· 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u> <u>으로 보한다.</u> <u>②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다음</u> <u>사항을 분장한다.</u> <u>1.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u> <u>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역 계</u> <u>획의 수립</u> <u>2.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u> <u>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 ·</u> <u>검사 · 판정 및 수입검역증명</u> <u>서 발급</u> <u>3. 야생동물검역관 및 야생동물</u> <u>검역사에 대한 교육</u> <u>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u> <u>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u> <u>본문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운</u> <u>영 · 관리</u> <u>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u> <u>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u> <u>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u> <u>정 · 감독</u>

제43조(한시정원) ① ~ ⑧ (생략) <u><신 설></u>	제43조(한시정원)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u>
환경부령 제91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환경부령 제91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은 <u>2024년 4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u>2026년 4월 30일</u>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별표 7의 정원 17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9명,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② ----- ----- ----- -----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
· 전산주사·환경주사·시설주
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명, 행
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
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명)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행정
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전
산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명, 행정주
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
· 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 또
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 행정서
기·공업서기·환경서기·시설
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및
사무운영서기보 4명으로 본다.

③·④ 삭 제

⑤ 별표 16에 따른 정원 2명(행
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
는 시설주사보 1명)은 2024년 4
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

2026년 4월 30일-----
2026년 5월 1일 -----

-----.

⑤ -----

----- 2026년 4
월 30일----- 2026년
5월 1일 -----

는 정원은 각각 별표 16의 행정 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 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행정 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 는 시설서기 1명으로 본다. ⑥ 별표 16의3에 따른 정원 1명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항 공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 무관·방송통신사무관·통계사 무관·사서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연구관 1명)은 <u>2024년 4월</u> <u>30일까지</u> 존속하며, <u>2024년 5월</u> <u>1일</u>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 원은 별표 16의3의 행정주사 1 명으로 본다.	----- ----- ----- ----- -----. ⑥ ----- ----- ----- ----- ----- ----- ----- <u>2026년 4월</u> <u>30일</u>----- <u>2026년 5월</u> <u>1일</u> ----- ----- -----.
환경부령 제105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환경부령 제105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환경부령 제91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2의 개정규정 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 ----- ----- ----- -----

2026년 4월 30일

2026년 5월 1일

[illegible]

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명)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4의 정원 9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명,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5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2의 정원 5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명)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2의 정원 5명(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5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4의 정원 5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명)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 2026년 4월 30일 ----- 2026년 5월 1일 -----

-----.

③ -----

----- 2026년 4월 30일 -----
----- 2026년 5월 1일 -----

-----.

④ -----

----- 2026년 4월 30일 -----
----- 2026년 5월 1일 -----

14의 정원 5명(행정서기·공업 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5명)으로 본다.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8]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96</u>	<u>399</u>	+3
일반직 계	<u>396</u>	<u>399</u>	+3
·	·	·	
·	·	·	
통계주사 · 사서주사 또는 전 산주사	1		
<u>행정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전문경력관 나군(화학물질 등록평가 담당)	9		
<u>전문경력관 나군(살생물물 질 · 제품 승인 담당)</u>	<u><신 설></u>	<u>2</u>	+2

[별표 10의4]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3</u>	<u>43</u>	+10
일반직 계	<u>33</u>	<u>43</u>	+10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 관 또는 환경사무관	1		
<u>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u>	<u><신 설></u>	<u>2</u>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 주사 · 전산주사 · 환경주 사 · 시설주사 또는 방송 통신주사	4		
<u>수의주사</u>	<u><신 설></u>	<u>3</u>	+3
·	·	·	
·	·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	<u>3</u>	<u>4</u>	+1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 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수의연구사 <u>수의연구사</u>	15 <u><신 설></u>	<u>4</u>	+4
---	--------------------------	----------	----

[별표 13]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47</u>	<u>349</u>	+2
일반직 계	<u>347</u>	<u>349</u>	+2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 사보	<u>53</u>	<u>54</u>	+1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 기보	<u>12</u>	<u>13</u>	+1
·	·	·	
·	·	·	

[별표 14]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49</u>	<u>351</u>	+2
일반직 계	<u>349</u>	<u>351</u>	+2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 사보	<u>59</u>	<u>60</u>	+1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 기보	<u>12</u>	<u>13</u>	+1
·	·	·	
·	·	·	

[별표 16의2]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9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방송 통신사무관	4		
<u>시설사무관 · 시설연구관 또 는 기상연구관</u>	<u><신 설></u>	<u>7</u>	+7
<u>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u>	<u>7</u>	<u><삭 제></u>	-7
·	·	·	
·	·	·	
시설주사	7		
<u>시설주사 · 시설연구사 또는 기상연구사</u>	<u><신 설></u>	<u>2</u>	+2
<u>시설주사 또는 연구사</u>	<u>2</u>	<u><삭 제></u>	-2
·	·	·	
·	·	·	

[별표 16의3]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9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항공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 서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 는 연구관	· · 1	· · 	
<u>시설사무관 · 시설연구관 또 는 기상연구관</u>	<u><신 설></u>	<u>7</u>	+7
<u>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u>	<u>7</u>	<u><삭 제></u>	-7
· ·	· ·	· ·	
시설주사	7		
<u>시설주사 · 시설연구사 또는 기상연구사</u>	<u><신 설></u>	<u>2</u>	+2
<u>시설주사 또는 연구사</u>	<u>2</u>	<u><삭 제></u>	-2
· ·	· ·	· ·	